

〈제1회 공청회 자료집〉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 장애인차별실태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일시 : 2003. 6. 25.(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현정기념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경석 · 변경택 · 이예자 · 정광윤 · 주신기 상임공동대표)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 기독변호사회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 다문화 · 대전장애인총연합회 · 대한의수족연구소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밀알복지재단 · 부름의전화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서울곰두리봉사회 · 섬김과나눔회장애인동사대 ·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 스카이콜밴 · 열린네트워크 · 울산장애인총연합회 ·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정애시민행동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끼판 · 장애여성문자조모임 다음 · 장애우권의문제 연구소 ·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 장애인의꿈-너머 · 장애인면의시설촉진시민연대 ·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주장애인총연합회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프랜드케어 · 푸른하늘 · 태화생꽃는집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증)모임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한국제가장애인협회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벗장애인어동봉사대. 이상 가나다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1004호 전화:(02)784-3501/2
팩스:(02)784-3504 / e-mail: kofod21@hanmail.net

인권정보자료실
Md1.2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연속공개토론회

기념회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 기간 : 2003년 7월 ~ 10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2시

(단, 8월과 10월은 유동적, 일정표 참조)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지하철1호선 시청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금세기빌딩)

□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화(02)784-3501~2/전송(02) 784-3504

일시	큰 마디	작은 주제
7월 9일 (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 되돌아보기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7월 23일(수)		생활시설·건강권 그리고 사회보장권에서의 장애인차별
8월 6일(수)		교육·노동에서의 장애인차별
8월 23일(토)	총칙·기구: 장차법 기초철학 다지기	장애인법의 목적과 체계, 장애와 차별의 개념
8월 30일(토)		권리구제기구, 사회적차별금지법 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계
9월 17일(수)	여성: 장애인차별안에서 여성 차별 다시보기	성의식·가족 그리고 생활시설내 에서의 차별 및 성폭력
10월 1일(수)		각 영역에서의 여성장애인 차별
10월 15일(수)	권리구제: 힘 있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만들기	권리구제절차(1) 시정명령, 입증 책임전환
10월 29일(수)		권리구제절차(2) 징벌적 손해 배상, 집단소송

** 상기일정은 추후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 · 청 · 회 · 순 · 서

사회: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 인사말 : 이예자(장추련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제1마당 : 우리들의 차별이야기

- 사례발표1 - 모성권에서의 여성장애인차별/심성은 3
- 사례발표2 - 보험사의 장애인차별/조병찬 7
- 사례발표3 - 듣기평가에서의 장애인차별/윤정기 16
- 사례발표4 - 운전면허 취득에서의 장애인차별/유기용 26
- 사례발표5 - 형사조사과정에서의 정신지체장애인 차별 /김미조 31
- 사례발표6 - 노동에서의 장애인차별 /이선희 33

• 제2마당 : 주제발표

- 주제발표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배용호 41
- 주제발표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방향/박종운 62

• 제3마당 : 토 론

- 토론1
장애인차별과 비정규직 노동자차별/조진원 94
 - 토론2
장애인 차별과 여성차별 /남윤인순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또 하나의 제언/박경석 111

[제1마당]

우리들의 차별이야기

사례1

모성권에서의 여성장애인차별

심성은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인권위원

지난 1998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UN의 기본법에도 장애인들이 성(性)과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하는 일에서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장이 곧 법률은 아니지만 선포됨과 동시에 비슷한 효력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보호와 지원 받을 권리'는 아직도 헌장으로써만 존재할 뿐, 충분한 현실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만의 특권이다. 물론, 누구든 특별한 인생관이나 철학에 의해서 결혼이나, 아기 낳기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차별 구조는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갖고,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를 좌절시키고 있으며 원치 않는 독신을 무언중에 강요하고 있다.

나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하듯이나도 아내와 어머니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써 결혼 적령기라는 이십대 중반부터 그 적령기를

십 오륙년 훌쩍 넘긴 나이에 만흔을 하기까지의 어려움, 또 아기를 낳고 나서 부딪혔던 육아의 어려움은 본래 내가 꿈꾸었던 평범한 여성의 삶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결혼을 하자 나의 장애는 시댁이나 친정 모두에게 관념으로 써만 이해되었고, 실제 상황에서는 비장애인 여성과 다를 바 없는 아내, 며느리, 엄마로써의 의무만 강요되었고, 어떤 때는 더 잘할 것을 요구받기까지 했다. 때문에 장애를 가진 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육아에 관한 어려움은 아직도 처절하게 머리 속에 각인 되어있다.

출산 후 제 몸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를 제대로 셧겨주지 못해 안타까웠던 일, 아기가 아팠을 때나 크게 다쳤을 때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마음만 타들어 가던 기억, 아기 돌보기와 산더미처럼 쌓인 가사 일에 치여 건강이 나빠지고 만성피로와 통증과 전망증에 시달렸던 일,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의 성화를 견디다 못해 집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느끼게 되는 불안과 공포,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 내가 아기를 낳은 것이 차라리 죄처럼 느껴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 육아 문제로 씨름하다가 결국 나는 이십 년 가까이 지켜왔던 직업을 잊고 말았다.

때로 우리 아기와 비슷한 또래를 둔 비장애인 엄마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육아가 가장 힘들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여성장애인의 육아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없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녀들 역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이 사회의 부정할 수 없는 구성원이라

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장애인의 육아문제는 하루빨리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장애인 문제를 더 이상 가족이나 친지들, 혹은 지역사회에 떠맡기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산후, 육아와 가사를 돌봐줄 수 있는 도우미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장애인 가정에 파견해 주어야 한다. 특히 부부 양쪽이 모두 3급 이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있어서 육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현재 서울시와 민간 단체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립 북부장애인 복지관과 서울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가정에 산후, 육아, 가사와 관련된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도우미의 숫자가 적어서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원봉사,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가정 도우미로 파견하는 방안도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탁아모나 가정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의료 지원 확대가 절실히다.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 장애 때문에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자연분만이 어려운 지체장애 여성이나 신체 구조상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만만찮은 비용이 듦다. 그러므로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립재

활병원 같은 장애인 전문 병원에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다루는 전문과를 신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장애에 맞는 적절한 상담과 처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자녀에게 보육시설 우선 입소를 허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우미 제도가 영아기 장애인 자녀 양육의 일차적 대안이라고 한다면 보육시설 이용과 보육료 지원은 영아기의 다음단계인 유아기 자녀양육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영세민과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보육시설 우선 입소 제도는 모든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까지 확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 차원에서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 스스로가 단체를 결성하고 가정 생활과 자녀양육에 관한 바람직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아기를 낳아 기르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벽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한다. 그러잖아도 우리주변에는 장애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 노산의 엄마,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두 아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고 있는 엄마, 장애를 가지고 직업을 유지하며 자녀를 길러내고 있는 엄마 등, 장애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엄마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이제는 이러한 여성들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눈여겨봐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신체적 장애가 곧 임신의 장애, 모성의 장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장애를 가지고도 아이를 다섯씩이나 낳아 키우는 복지 선진국에서의 일이 그리 멀고 먼 남의 이야기만이 아닌 현실이 올 것이다.

사례2

보험사의 장애인차별

【월간 함께걸음 보도내용】

뉴스 뒤의 진실 찾기

보험사의 두 얼굴, 무엇이 진실인가

<전단>

지난 4월 25일 장애우라는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장애우가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보험제도상 그동안 장애우들이 받아온 수많은 차별의 첫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4월 25일 이후 각 일간지들은 해당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들은 특히 나름대로 민간보험사를 상대로한 장애우의 국내 첫 소송이라는 점에 주목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 단순보도에 머물러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고 사건의 본질인 차별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보험 차별의 진실은 과연 뭘까,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 2월 17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법무법인

지평이 조사해서 발표한 ‘민간보험상의 장애우 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우 22.1%가 보험가입에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이유로 77.5%가 ‘장애’를 들었다. 또 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당한 경우도 15.4%에 이르렀다.

굳이 이런 통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장애우가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조병찬씨(29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많은 장애우들이 보험가입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 부담과 아울러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사가 장애우를 터부시하는 그릇된 관행을 사회에 알리고 민간보험제도상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어렵게 소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장애 때문에 가입거부, 모욕감 느껴>

그가 처음 프루덴셜생명 보험모집인인 채모 씨를 만난 것은 작년 9월로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유사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그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처음 채씨를 만났다. 이 날 채씨는 “프루덴셜의 종신보험은 약간의 비용투자로 어떤 사고에 대하여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맞춤형 상품이므로 자체장애 1급인 조씨에게 적절한 상품.”이라고 설명하였다. 채씨의 권유로 고려 끝에 가입을 결정한 조씨는 바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회분 보험료 15만 8천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확히 보험에 가입한 뒤 30일 째 되는 날

인 10월 25일. 그는 뜻밖의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름하여 ‘보험청약거절통지서’가 날아온 것. 이유는 간단했다. ‘의적거절’ 의료적 이유로 거절한다는 뜻이다. 통지서에는 의적거절이라는 단어 외에 가입 거절 이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처음 의적거절이라는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단어에 당황했던 그는 뒤늦게 채씨로부터 그의 장애가 보험계약 거절의 이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병찬 씨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나 뇌성마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다. 그의 장애가 보험사고율을 높인다는, 혹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가입당시 보험모집인인 채씨는 그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특히 청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조씨는 사실 그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웹마스터로 일하면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조병찬씨. 고교시절 학생회장을 역임했고 대학에서는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활동력을 자부했던 그였기에 자신의 장애가 보험 가입의 ‘장애’가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채씨로부터 자신의 장애가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한 모욕감마저

들었다고 한다.

<장애우를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

프루덴셜 생명보험은 정말 조병찬씨가 생각하는 대로 장애우이기 때문에 가입을 거절한 것일까?

사건과 관련해서 프루덴셜 측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프루덴셜 측은 “내부규정상 인터뷰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대신 타보험사 보험모집인인 서모씨에게 보험사 내부사정에 대한 통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서씨에 따르면 각 보험사별로 ‘인수제한’과 ‘인수금지’라고 하여 가입자를 선별, 제한하는 내부매뉴얼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인수제한·금지 항목에 장애의 종류, 경중에 관계없이 장애우는 어김없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험사고 발생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 체결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보험가입자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에게 있으며 이는 법의 통제를 받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서씨의 설명이다.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규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감독하는 것 이상의 기능은 없다는 것이 서씨의 말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조병찬씨 소송대리인)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중되어야 할 원칙이나 전체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용인된다”면서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 ‘자유’가 누군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형식이라면 분명한 제한을 가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병찬씨의 경우 프루덴셜 측이 장애우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 것은 엄연한 차별행위이며 이는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및 차별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프루덴셜 측은 장애우이기 때문에 가입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의적거절’이라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임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이의 보험사고율이 더 높다는 아무런 의료적, 통계적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다면서 “프루덴셜측은 차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송의 핵심은 조병찬씨의 장애가 보험사고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혹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애와 보험사고의 상관관계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생명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장애와 보험사고의 상관관계에 대한, 즉 장애우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거나 낮다는 혹은 비슷하다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며 또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보험사는 궁극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애우와 관련한 통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애초부터 보험사들은 장애우를 소비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시장성이 없는 장애우들은 소비자로서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우의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가입 거부>

사실, 보험사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만으로 가입 절차부터 장애우를 차별하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의 심사기준을 완화한 ‘장애인 공통계약 심사기준’을 마련해 200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 장해등급분류표상 인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71종의 장해항목 중 57개 항목이 ‘불가’에서 ‘정상’으로(그러나 9개 항목은 여전히 불가항목으로 남아 있어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쳐졌다.

또 장애우가 일반보험에 가입할 경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병찬씨의 경우와 같이 경제·사회 활동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장애우의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장애’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실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장애우들의 장애란 질병을 가진 진행성 장애라기보다는 재해 또는 원인미상에 의해 발생된 장애가 이미 고착화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장애인미래연대,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제도 개선 건의안’, 2000)

이 고착화된 ‘장애’를 보험사는 진행성 ‘장애’의 개념과 구별하지 않고 생각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일단은 가입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조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현재도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장애가 노동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생명보험협회가 마련한 인수기준 불가 항목에 그의 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조병찬씨가 가입하려던 보험상품인 종신보험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으로 장애우라는 사정을 반영해(실제 계약 청약 당시에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이다) 상품설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듯이, 보험사도 무엇이 장애이고 무엇이 편견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이 차별인지 모르고 있다. 대다수의 장애우들은 청약심사를 거치기도 전에 보험모집인과의 면담 단계에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기 일쑤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무지는 보험모집 단계에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의 두 얼굴, 어느 쪽이 진실일까>

프루덴셜 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어 답답해 하던 중 기자는 반가운(?) 기사하나를 발견했다. 모 일간지에 실린 프루덴셜의 최석진 사장 인터뷰 기사를 발견한 것. 기사는 프루덴셜이 공익사업에 많은 돈과 역량을 투자하는 이유는 미국본사의 출발자체가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최 사장이 본업보다 공익사업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한다. 최사장은 인터뷰 말미에서 “2~3년 정도 더 현역에서 뛰고 난 뒤에는 진짜 사회봉사 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 그런데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보험사……. 이 두 보험사가 같은 회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또 하나 석연치 않은 점은 조병

찬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처음 보도 된 날로부터 불과 일주여 일이 지난 시점에, 다른 일간지들과 달리 이 사건을 다루지 않은 신문사에 피고측인 회사 사장의 인터뷰가 실렸다는 점이다. 그 내용도 사장 개인에 대한 인터뷰라기 보다는 다분히 회사를 홍보하는 듯한 내용으로 말이다. 이 시기의 절묘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조씨는 처음 청약 거절 통지서를 받고 프루덴셜 측에게 수차례 거절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프루덴셜 측은 “회의중이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누구도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우 관련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곳을 수소문한 그는 국가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면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라고 판단,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판례가 남아 본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장애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장애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장애우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를 갖게 되었다.

공적 사회보험이 부실한 한국사회에서 보험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장애우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보험사의 인식은 사회적 인식과 맞물려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애와 보험사고에 대한 의학적 보고나 통계적 자료가 없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조병찬씨의 소송은 진행중이다. 장애우들과 차별없는 세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것

이다. “차별행위를 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는 조병찬 씨의 말이 바람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함은혜 기자

사례3

듣기평가에서의 장애인차별

윤정기 / 한국농아인협회 기획팀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제위원이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윤정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차별사례는 토플, 토익, 텁스 등 공인영어시험의 배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해시험 부분에 있어 시험관련기관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필대체시험 등의 정책적인 배려 미비로 민주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의 응시에 제한받는 등 불평등한 처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함과 동시에 공론화 하려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반적으로 영어 공인점수라는 것은 일반 중 소기업 대기업체의 입사시나 상급 교육기관에의 입학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도 합격을 좌우하는 등 노동권 내지 교육권의 향유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게 작금의 추세입니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법시험 1차 영어

과목의 경우 민간기관시험기관(토플, 토익, 텁스)의 사험성적으로 대체하는 계획에 따라 청각장애인은 영어 공인시험의 청해시험에 대한 배려미비로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점수(토플 195/300, 토익 700/1000, 텁스 625/1000)마저 취득아 어려워 사법시험에 원칙적으로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된 실정입니다.

저의 경우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96년부터 올해로 8년째 출곧 사법시험 준비를 해왔고, 지금까지 법원사무관(5급) 시험 한번을 포함하여 사법시험만 4번 응시해왔는데 실력이 모자라 번번이 떨어졌습니다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더 이상 응시가 곤란해졌단 말이 되겠죠. *전국으로 막 있는 실정*

이것은 공인영어시험 대체라는 제도도입 자체의 근원적 정당성의 문제를 떠나 그동안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만 응시해오다가 내년도부터 법무부의 영어대체시험 계획으로 하루아침에 응시가 제한되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차별이란 높은 벽을 또 한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같이 눈이 곧 귀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각장애인도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이른바 공인영어시험을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필시험으로 대체하는 등의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만을 품게 되었고, 향

후 시험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시사법률신문 6. 10자 1면 기사 참조)

왜냐하면 사법시험 영어가 토플, 토익, 텁스등 민간기관 공인점수로 대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토플, 토익은 국제규정에 의한 시험이라 이를 차치하더라도, 텁스의 경우는 국내규정에 의한 시험이므로 시험 주관처로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해부분의 배려가 없으면 사법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사법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성의 문제가 나올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사법률신문사 이상옥 기자님에게 들은게 있어 한 말씀드리자면 사법시험 청해시험 부분과 관련하여 올 초부터 청각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대책을 법무부도 준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영어주관시험이 법무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도 충분한 대비책이 없더랬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에 법무부 사법시험 담당 검사에게서 청각장애 수험생의 사법시험 응시와 관련한 영어대체시험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하고 본회로 문의해 왔습니다.

법무부 의견인즉, 토플이나 토익은 국제규정에 의한 시험이

므로 청해부분을 면제 내지 지필대체 등의 방법으로 배려받아 취득한 점수로는 사법시험 영어대체로서 적용이 어렵고, 대신텁스의 경우는 국내규정에 의한 시험이므로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점수로써 법무부의 재량하에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덧붙여 청각장애 2~3급은 청해부분 면제, 4~6급은 보청기 등 보장구를 착용하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받아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시험치는게 어떻겠는가하는 의견도 제시해주더군요.

이에 대하여 본회는 청각장애인의 영어 청해시험을 지필고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는데, 말하자면 청각 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청해시험을 면제받는 대신 시각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지필시험대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로서 청각장애인은 청력상실부분에 대한 조기청각교육 유무에 따라서 급수에 관계없이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르므로 법무부에서 제시한 청각장애 2~3급 청해부분 면제, 4~6급 보청기 등 보장구 착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에 따른 의견도 법무부에 제출하였지요.

그러나 무슨 이유때문인지 아직까지 법무부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어느 세월까지 마냥 기

다릴 수만도 없고, 본회차원에서는 저를 포함한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공인점수 취득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인영어시험 청해시험부분과 관련하여 대학재학시 제가 겪은 또 하나의 불평등한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른 대학들도 점점 도입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경희대학교에는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규과정 외 별도로 전산(컴퓨터) 그리고 영어 등 외국어에 대해서 재학생이 졸업하는데 갖춰야할 일정 능력의 인증으로서

CRS(Competence Requirement System)제도라고 하는 졸업 인증시험제도가 있습니다.

전산은 청해부분이 없어 다행이지만 영어의 경우 토플(PBT)500, 토익600, 텁스500 점(현재는 단과대학별 시행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저희 법대의 경우 토플(CBT)213, 토익750, 텁스 656 점 이상)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졸업이 가능했지요.

저의 경우 재학시 학교에서 텁스시험(템스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전체 990점 만점-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면 1000점으로 청해부분이 400점, 문법어휘독해부분이 600점을 차지함)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학생인 저를 위해 대학 본관측에서 텁스시험주관기관에 문의해본 바,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해부분에 대한 지필대체 등의 시험이 없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제 입장으로선 어떻게든 학교를 졸업해

야겠단 일념으로 청해부분을 외면한채 나머지 분야인 문법 어휘 독해부분에 사활을 걸고 연거푸 3번 응시했지요. 그러나 실력도 실력인지라 결국 청해부분(비율 400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제 때 패스하여 졸업하지 못한채 그동안 수료생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이후 4번째로 텁스시험에 응시하여 지난 5월에 겨우 패스해서 이젠 수료생 신분을 면하고 올 8월 말에 철 지난 졸업장을 받게 되었지요. 기쁘기에 앞서 웬지 알 수 없는 서글픔이 앞섭니다.

비단, 이런 경우는 아마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각 대학들이 이같이 학점 이외에 별도의 졸업요건으로서 CRS제도를 마련한 것은 학력뿐만 아니라 취업시에도 실질적인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일견 타당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청해시험부분의 합리적인 배려가 무시되면 앞으로 청각장애학생은 대학에 입학했으되 졸업하기는 참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에서의 심각한 차별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대학졸업생이 아닌 수료생의 양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새로이 추가된다고 하는 말하기영역의 경우 언어구사에 불편함을 겪는 뇌성마비 장애인등 여타 장애인 수험생에게는 더할 수 없는 권리침해로서, 빠른 시일내에 텁스시험주관처의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침해의 범위는 한층 더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짧게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공인영어시험(특히 토익이나 텁스)이란 것은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뿐 아니라 여러 대학에 도입된 CRS라는 일종의 졸업능력인증 시험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체나 각종 관공서 등에 취업할 때도 그 취득 점수가 합격의 주요 변수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침이 작금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본 시험의 청해시험의 경우 현재로선 저를 포함한 모든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필대체 등 공평하고 적절한 제도적인 배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의 응시불가 내지 제한은 물론 대학 졸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걸림돌인 교육권침해에다가 취업과 관련해서 생존권 침해마저도 생각하게 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책제언으로서 공인영어시험주관기관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의 장애급수에 따라 청해시험의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청각장애로 등록한 모든 청각장애인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청해시험을 문자방식의 지필평가로 대체하여 시험을 보는 방식이 합리적이 아닐까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 이하 첨부 보도내용 참조>

출처 : 시사법률신문 2003년 6월10일 제1면(www.sisalaw.com)

영어대체시험 憲訴 '난항'

고시생 및 청각장애인 중심 헌법소원 준비
시험당국, 영어시험시험 장애인대책 소홀
농아인협회, 듣기면제보다는 지필시험으로

올 3월부터 수험가에 불기 시작한 영어대체시험의 위헌성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각종 시험관련 사이트 게시판에는 영어대체시험의 헌법소원을 놓고 수험생간 논의가 활발했으나, 소제기를 위한 수험생들의 참여가 미비하여 헌법소원 제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영어대체시험관련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양모씨(31세)는 "그 동안 국가고시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영어대체시험에 대한 헌법소원을 놓고 수험생간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로 재판에 참여할 인원의 모집이 어려웠다"면서 "특히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에 대한 시험당국의 배려가 열악하여 이들과 연대하여 앞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양모씨는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

을 준비중이며, 준비가 끝나는대로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영어대체시험의 법리적 논쟁을 떠나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사법시험에 응시조차 하기 힘든 장애인들도 시험당국의 배려를 요구하고 나섰다.

독해와 청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어대체시험의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자문제지 제공 등 대책이 마련돼 있으나,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1·2급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시험당국이 사전에 충분한 주의와 배려를 하지 않아 내년도 사법시험 등 시험응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조기청각교육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르므로, 시험당국이 일률적으로 장애급수에 따라 2·3급 청해부분 면제, 4·6급은 보청기 등 보장구를 착용하여 시험 치르도록 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청각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청해부분을 면제받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기능을 사용하여 시험응시가 가능하므로 지필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익 및 텁스시험 관련 담당자들은 "내부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험대책이 있지만 전혀 들리지 않는 1·2급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에 대한 문제는 법무부, 행자부 등 시험당국이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관계자는 "연초에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이 영어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영어시험주관기관과 협의를 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점자문제지를 이용하고, 보청기 등 보장구 사용이 가능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텁스나 토익 시험 기관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전혀 들리지 않는 1, 2급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도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다"라면서 "좀 더 상황을 판단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2급 청각장애인인 윤정기(경희대 법대 졸, 37세)씨는 "청각장애로 말미암아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인영어점수 취득조차 어려워 사법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건 분명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각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텁스, 토익시험을 청각장애인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향인 지필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향후 시험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씨를 비롯한 영어대체시험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수험생들은 우선적으로 헌법소원 외의 사전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이후 구제받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사례4

운전면허 취득에서의 장애인차별

유기용

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위한사람들의모임

대중 교통 이용도 차별, 자가 운전도 차별!

1.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 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나는 2002년 6월 28일 응시하고자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갔다. 시각 검사와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은 후 안내로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 검사를 받으러 갔다. 이 운동능력 측정 검사는 총 3개 항목을 보는 것으로 핸들 조작, 키어 조작, 브레이크 조작 능력을 등을 측정한다.

이와 유사한
테스트로 설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운전면허 운동 능력 테스트는 비장애인은 보지 않고 장애인에게만 극한해서 보는 것으로, 엄격한 장애인의 운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또한 기준 중 하나인 4.8kg 수동 핸들을 2.5초 이내에 580도를 회전 하여 24초 동안 유지해야 합격하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힘든 것으로, 신체적 약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거의 모든 자동차에 매우 적은 힘으로 돌

릴 수 있는 파워핸들이 장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운전 능력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른설정이다.~~

또한 이 운동능력 측정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 68조 3항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의 시행령으로 운동 능력 측정 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의 법 조항의 취지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운동 능력 측정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구조의 차량으로 운전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오랫동안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큰 장벽이다. 지하철역사의 수많은 계단,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휠체어 리프트와 접근조차 생각할 수 없는 높은 계단의 버스는 우리 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에게는 자가 운전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이동 수단이자, 사회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통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면허 시험 과정에서 차도 법적인 근거도 없고 비현실적인 장애인 운동 능력 측정 검사를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더구나 이 검사는 비장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박탈하는 처사이다. 그 동안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 검사로 인한 차별과 피

해를 받았으며, 운동 능력 측정 검사와 폐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투쟁은 그 동안 장애인의 운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 운동 능력 측정 검사를 완전 폐지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운전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

장애인의 자가 운전권 차별 문제의 원인은 '장애인은 불안정하고 위험할거라는' 아주 고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겉보기에는 장애인에게 운전이 위험하거나 불안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가? 과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가? 이런 노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정한 잣대만을 정해 놓고 장애인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장애인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테크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아무리 겉보기에는 심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고유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장애인 개개인의 테크닉이 있는 것이다.

이 원리는 장애인이 운전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식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발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양팔 장애인들은 발로 운전을 한다. 과연 이

것을 현행 장애인 운전 면허 제도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현행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특성과 의견을 완전히 반영하지 만든 제도인 것이다.

위의 내용처럼 세계적인 추세가 다양한 제도와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운전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우리나라 구시대적인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운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신체적 약자 및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엄연한 차별하는 것이다. 또한 특히 이동이 힘든 중증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매우 거대한 장벽인 것이다.

2.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장애인 운전 면허 제도의 문제는 비단 이번만 제기되었던 것은 아니다. 98년에도 한 중증 장애인에 의해 제기되었고 각종 언론에 이슈화되었다. 마침내 담당 부처인 경찰청까지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 때에도 경찰청은 외주 용역을 주어서 연구한다고 발표했으나 아무 경과가 없었다. 그 후 이번에 또 다시 부당하게 운전 면허 시험에서 탈락한 중증 장애인들에 의해서 제기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즉, 장애인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적 관점이 아닌 장애인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차별적인 조항들을 제거하는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 검사는 재활 의료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대필 제도나 자기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문제도 어떤 장애 유형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 기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장애인이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이고 다리의 힘이 어느 정도 인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장애인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테크닉에 문제로 어떤 이론적 근거나 잣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자가 운전권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하 장자모)은 장애인 운전 면허 제도 개선 연구 모임에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장애인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다.

이 밖에 운동 능력 측정 검사 기준 완화가 아닌 완전히 폐지할 것과 자기 신체 조건에 맞게 차량 개조를 제도화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받거나 무조건적으로 재활 치료의 대상화되지 말고 운전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사례5

형사조사과정에서의 정신지체장애인 차별 경기조

【상담사례 정리내용】

이 상담은 지난 11월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던 상담입니다. 아들은 고2, 현재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입니다. 정신지 체 3급 장애가 있는 이군은 수업시간에 장애의 특성상 잘 앉아있지 못하고 근처를 돌아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수업시간에 교실을 빠져나와 학교근처의 모교회 안에서 배회하고 있었고, 낯선 학생이 와서 계속 배회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아저씨가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서 그전에 교회에서 성경책이 없어지거나, 자판기의 돈을 누가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교회관리하는 일에 있어 예민한데 이 학생이 와서 얼쩡거리니까 파출소에서 이 학생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지요. 파출소에서는 이 학생의 데려다가 조사를 했는데 관리인의 말을 빗대어 교회에서 무얼 훔치지 않았느냐고 자꾸 추궁을 한거죠. 보통 성인들도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면 위축되고 긴장되어서 본인의 권리 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은 경찰이 육박지르고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겁을 주니까 다 자기가 훔쳤다, 그전에도 경찰서에 조사받은 적이 있다 등을 진술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까

지 보호자인 부모도 그 사실을 연락 받지 못했고, 학교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주장은 잠깐만 대화를 해봐도 장애인인줄 알 것인데 어떻게 보호자에게 연락도 없이 조서를 다 꾸밀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군에게 얼마나 겁을 주었으면, 부모를 만났을 때 경기를 하고 경찰서 근처만 가려고 해도 자자리지고 정신착란증세를 일으키냐는 것입니다.(어머니의 진정서 내용임) 본인이 집전화번호등을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그 근처 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으니 학교로 연락했으면 금방 알수 있었을 텐데 그 연락조차 경찰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현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군이 잡힐 당시 교회근처를 배회했을뿐 성경책이나 자판기 돈을 훔친것도 아닌데, 현장연행된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다가 조사과정에서 무리하게 여죄를 물어 조서를 꾸민 점, 꾸민 후 한글을 잘 이해하기 힘든 사람에게 조서에 도장을 찍게한 점, 실제로 훔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무혐의처리가 아닌 기소유예처리가 된점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이며, 조사과정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머니가 직접 진정한 상황입니다. 이후 헌법소원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6

노동에서의 차별

이선희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편견이 일을 할 수 없게 한다. 일하고 싶다.

나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장애를 교육으로라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문대를 졸업했고, 다시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직업전문학교에도 다니고 있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을 갖추여야 하기에 직업전문학교에서 컴퓨터 그래픽 등을 배워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0여 차례의 이력서를 내봤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지금은 “보수는 얼마가 되든 일이 하고 싶다.” 30여 차례의 이력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한 것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노린 회사에 6개월을 근무한 경력이 전부이다. 대부분 면접에서 외관상의 장애(안면근육이 일그러져 언어장애가 있고, 팔, 다리도 부자연스러움)를 이유로 거부를 당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로 월 20여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이유로 부모님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주신다. 나는 지금 무엇보다도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사회 참여 제약이 계속되면서 의존적인 사람 동정의 대상으로 살아야한다는 불안

감에 시달리고 있다.

차별 경험 1

나는 심한 뇌성마비 장애로 안면근육이 일그러져 언어장애가 있고 팔다리도 장애가 있어 걸음을 걷거나 수작업을 할 때의 속도가 일반 비장애인의 속도보다 느리다. 전국 여성장애인의 67%가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교육정도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나는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고학력이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도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다. 대졸임에도 일을 통해 희망하는 보수는 월 60만원 정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나를 소개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을 구한다는 회사측 대표와 관리부장과 두 차례 전화를 해서 구인조건과 업무내용을 확인했다. 회사측에서는 영업사원들이 한 실적을 컴퓨터로 문서화하는 주요 업무라고 했고, 전화업무에 대해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야기에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음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내담자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통해 여성장애인 구인을 명시하고 사람을 구한 경우였고, 조건 역시도 사전에 두 차례의 통화를 통해 분명히 확인을 한 뒤라서 면접을 치루러 갔다.

그러나 뇌성마비 장애인임을 알고, 언어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했음에도 몇마디 나누기도 전에 “우린 전화 받을 사람이 필요한데.....”라는 말을 먼저 건넸다. 나는 “제 상황을 알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왔는데, 전화를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더 할 말이 없네요.”하고 돌아왔지만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알려지면서 실제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구인업체에서 찾는 인력은 제한적이라 취업 상 애로를 겪는 여성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취업의 기회를 얻는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란 현실을 새삼 체감했다.

차별 경험 2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에서)

청주기능대학에서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에서는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업체가 2곳 있었다. 구직신청서와 이력서를 써서 접수하고 면접도 보았다.

웹디자인 부분도 참신성, 창의성, 감각이 필요하다고 한다. 편집 일에는 자신이 있지만 그림 그리는데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 뇌성마비 장애 증상은 손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 졸업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완성이 되면 보여겠다고 했고, 일단 그 다음 주에 연락 준다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이력서를 낸 곳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즈음 다른 곳에 면접을 봤는데 마땅히 시킬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차별 경험 3(나도 일하고 싶다)

지방단체장선거 후보자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할 여성장애인을 구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었다. 통계학을 공부한 경험을 말하고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했더니 면접시에는 “같

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전화로 다음 기회에 인연을 맺었으면 한다는 말로 거절을 하는 회사도 있었다.

차별경험 4.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노린 회사에 취직을 했으나 사업이 안돼서 6개월만에 전 직원이 해고를 당했는가 하면, 해고 당시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독촉을 했더니 4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일시불도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받았다.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월말에 임금이 지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유용을 하다가 준다는 소문을 동료직원에서 들은 적이 있다.

차별 경험 5 (카드입력회사 면접 봤을 때)

어느 카드입력회사에서는 중간 알선자를 통해 사전에 언어장애가 있다고 말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내 장애가 이 정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직접 전화를 통해 위치를 물어보고서 면접을 치루러 갔다. 인사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위아래로 쳐다봤다. 나중에 사장이 와서 이력서를 보더니 우습다는 듯 “전문대 나왔네 하더니 전화 받는 사람이 필요한데 000씨를 보니 어렵다.”며 노골적인 거부를 당했다. 중간에 알선해주신 분과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았으나 분노와 절망을 안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희망 및 제언(장애인형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속도에 의한 효율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직종은 자기 자본이 아닌 이상 남들이 안 하는 일, 몸이 아닌 두뇌를 사용하는 일, 소프트웨어 쪽이 좋은 거 같다.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대인적인 업무는 힘들다고 여겨진다.

지금 자격 시험에 있어서도 현재의 겸증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차별이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할 줄은 알아도 시간제약에 걸려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필기시험에선 항상 80점 이상을 받았다.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획득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사회적 자리가 없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으로 느껴진다. 더구나 효율과 능력을 중시하는 현 사회에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와 노력과 능력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일을 갖기가 힘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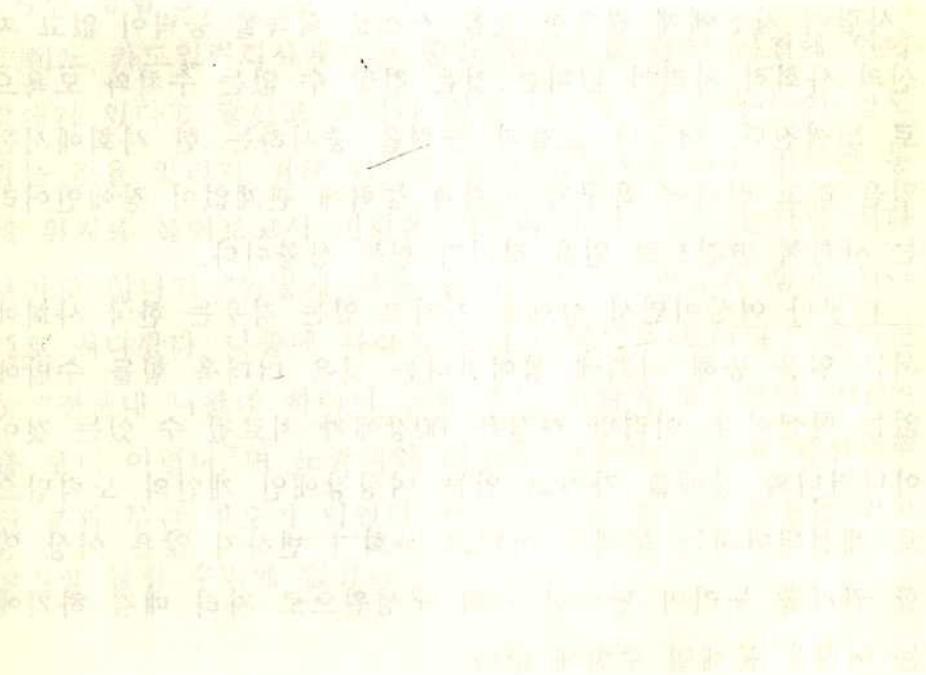
더구나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는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00장애인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니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개선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변하지 않은 이상 일을 권리 를 누리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 하기에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기쁘게 일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속도가 아닌 삶의 질로서 살아갈 권리라는 장애가 있건 없건 누구나 누려야하는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사회는 장애인이 그런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을 만드는데 너무 무관심하다.

무능력한 존재,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우리의 몸부림이 사회에서 하루 빨리 수용할 수 있는 내일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제2마당]

주제발표



주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배용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2003년 올해 최고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5대 사회적 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올해에 들어와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모여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과는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장애계에서는 이미 지난 2001년도부터 부산의 열린넷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도 하반기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앞장서서 범 장애계가 함께 모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육, 노동, 접근, 생존,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차별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인권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뿌리 깊게 그리고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불감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심하게 했으며,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장애인 당사자들마저도 그것이 차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참고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개인과 집단들 간의 차이 가운데 특정한 차이들이 차별로 전환되는 것은 그 차이가 위계성을 띠게 될 경우이다. 그리고 서열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은 열등한 존재로, 또는 부인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된다. 이러한 범주화 과정을 통해 분리되고 배제되고, 통제되어야 할 개인과 집단이 정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그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강화되고 재생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별의 사슬은 완성된다.¹⁾ 다시 말해서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과

1) 조순경, “차이의 신화와 차별의 현실”, 인권학술회의 2002자료집 : 한국인권의 현

사람 사이에는 외모, 성별, 학력, 종교, 취미, 지역 등과 같은 다양한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모두 차별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차별이란 그러한 차이들이 힘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좋고 나쁨, 선함과 악함, 우수와 열등 등으로 서열화되거나 계층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차별의 결과로 인해 차별을 당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는 외모, 성별, 학벌, 지역 등에 의해 심한 차별을 개인과 집단에게 가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로 인한 차별은 매우 심하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장애인(그 가운데서도 비장애인 남성)에 의해 사회는 형성되며, 지배된다. 비장애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구조 속에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는 소외되는 장애인을 향해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찍게 된다. 이러한 낙인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가중되고 편견은 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차별의 고리는 완성이 된다.

(1)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중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취업자의 비율은 36.3%였으며, 무직자의 비율은 52.6%로 나타났으며, 직종에 있어서

도 농업 및 어업이 9.4%, 단순 노무직 8.3%, 서비스 및 판매직 7.4%로서 위의 직종이 전체 취업장애인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취업자의 27.6%가 전문가/기술공과 사무직인 비장애인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²⁾

장애인의 고용에서 차별을 받는 이유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고용주(경영자)의 이해부족(36.7%),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의 부족(22.9%), 직장의 편의시설 부족 또는 미비(18.4%)가 대표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³⁾ 실제로 장애인들은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면접 등의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 보고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40.9%가 아주 심한 차별을 경험했으며, 41.3%가 약간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모두 82.2%가 취업과 면접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⁴⁾ 또한 장애인의 차별은 민간 기업에서뿐 아니라 공공기관(공무원 임용)에서도 역시 아주 심하게(35.1%), 약간(44.5%)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2)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21.5%가 무학이었으며, 초등학교 30.1%, 고등학교 24.1%, 중학교 14.2%의 순이었다. 따라서 51.6%의 장애인이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2)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p.142.

3) 이성규,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한국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서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1), p.399.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년 한국장애인인권백서(서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p.57.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위의 책, p.59.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26.6%, 중학교 15.7%, 고등학교 38.0%, 대학교 이상 19.7%로서 전체 국민의 57.7%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큰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⁶⁾

장애인 스스로도 교육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36.1%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인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가 65.7%로서 전체의 36.6%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경험율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취학시 특수학교 진학을 강요당하는 비율도 전체 장애인이 46.1%인데 반하여 정신지체인은 70.3%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도 심각하지만 정신지체인의 차별이 특별히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⁷⁾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0%가 적절한 학교가 없어서 진학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학교의 편의시설의 부재 및 특수학급의 수요가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⁸⁾

최근 박지주씨가 송실대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서울대학교에서 학교의 일방적인 편의주의적 지원에 대한 반대 1인 시위 등은 교육권 내에 있어서의 차별이 아직도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공공시설 및 건축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는 새로 시행되고 있는 편의증진법에 의하여 전국 153,093개소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편의시설 설치율은 48.2%

6)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pp.140-141.

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앞의 책, pp.117-119.

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위의 책, p.119.

라고 발표하였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모두 16개 항목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시설이 70.4%로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여주었으며, 공원(34.1%), 여관(33.7%) 등이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여주었다.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을 보면, 접근로(62.3%)와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54.2%)가 그나마 높은 설치율을 보여준 반면, 화장실(17.0%), 시각장애인안내설비(8.0%), 청각장애인안내설비(6.4%) 등이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여주었다.⁹⁾

이러한 편의시설의 미비는 공공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 장애인들은 외출 및 활동에 가장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이것은 장애인의 삶의 질의 구성 요소의 중요도 순위에서 법적 권리 보장, 학령기 통합 및 전이에 이어 편의시설 설치가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¹⁰⁾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4)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

1999년도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횡단보도의 턱낮추기가 되어 있는 곳이 36,145개 가운데 32,752개로서 90.6%의 설치율을 냈으며, 점자블록의 설치 역시 37,818개 가운데 32,818개로서 86.8%의 설치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도로의 유효폭, 도로의 기울기 등은 아직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대다수의 도로가 좁거나, 심하게 기울어져 있거나 공사중이거나 심하게 울퉁불퉁거려 다니기

9) 배용호, “편의시설의 정의와 편의증진법의 이해”, 2001 편의시설 시민대학(서울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1), p. 20.

10) 박승희, “장애인의 삶의 질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화 연구”, 재활복지 제4권, pp.92-98.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다.¹¹⁾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정도이다. 버스의 경우는 저상버스나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시내버스가 단 1대도 없으며, 택시의 경우도 역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택시는 단 1대도 없다. 지하철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역시 이용에 어려움은 많다.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1기 지하철(1호선에서 4호선)의 경우, 2001년 7월 현재 140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은 13개 역,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61개 역,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68개 역,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136개 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2기 지하철(5호선에서 8호선)의 경우, 2001년 7월 현재, 130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은 56개 역,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역은 72개 역,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130개 역,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126개 역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 270개 역 가운데, 40.37%인 109개 역에는 휠체어리프트나 엘리베이터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자가운전에 대한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에게만 요구되는 운동능력측정시험은 합리적인 근거도 전혀 없이, 운전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운전능력이 떨어지고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킬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경적 소리를 듣지

11) 배용호, 위의 글, p.21.

12) 자료집, “서울시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서울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1), pp. 2-12.

못한다는 이유로 1종 면허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텔레비전 자막방송 역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나 모든 텔레비전에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청각장애인인 개인적으로 자막수신기를 구입해야 하며, 그밖에 비디오 등에도 자막(캡션)삽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한국 영화의 경우 자막이 삽입된 비디오테입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아직도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이나 매스컴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¹³⁾ 특히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수화통역의 지원이나 TDD 서비스 등은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점역도서의 한계, 웹서비스에 있어서의 지원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정보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들은 삶의 질의 중요도 우선 순위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을 가장 중요한 1순위로 보았다.¹⁴⁾

(6) 성에 있어서의 차별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의 성에 대한 차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장애인에게서 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성을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에게서 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장애인을 중성으로 보는 것이다. 로마노는 장애인의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⁵⁾ 첫째,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성이

13) 배용호, “편의시설의 의미와 편의증진법의 이해”, p.22.

14) 박승희, “장애인의 삶의 질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연구”, p.97.

15) Mary D. Romano, “Sex and Disability”, *Disabled People as Second-Class Citizen*(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U.S.A, 1982), p.67.

없는 중성 혹은 무성(asexual)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인은 성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셋째, 장애인은 의존적이며,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보호를 받지 않고 성에 대해 허용할 경우 더많은 장애인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성기의 삽입을 통한 섹스만이 유일한 진짜 섹스이며, 그밖의 것은 진짜 섹스가 아니다. 따라서 성기의 삽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진짜 섹스를 할 수 없다. 다섯째, 만약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성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편견들은 장애인을 성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성에 대한 차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차별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과 여성으로서의 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가사나 육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성차별과 성폭력과 같은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45%가 가정 내에서 양육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이성교제 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결혼 후에는 시댁가족과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울러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성적인 부당한 경험과 각종 언어, 비언어적인 폭행을 당한 응답자도 전체의 25%에 달했다.¹⁶⁾

고용의 기회를 보면, 남성장애인의 경우 전체의 43.5%가 취

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앞의 책, p.167.

업을 한 반면에 여성장애인의 경우 19.5%만이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의 유형에 있어서도 남성장애인의 경우 자영업 51.7%, 일반사업체 37.5%인 반면에 여성장애인의 경우 자영업 62.8%, 일반사업체 23.9%로서 여성장애인의 자영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전체 20대 여성의 50.7%가 미혼인 반면에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72.8%가 미혼이었다.¹⁸⁾ 이것으로 보아 결혼의 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전체의 44.6%가 이성 교제시 차별을 경험했으며, 34.1%가 외모, 옷차림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전체의 25.3%의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40.0%의 여성장애인의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임신, 출산시에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은 39.1%였으며, 자녀 양육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도 45.3%였다.¹⁹⁾

(7) 생활시설에서의 차별

생활시설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내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내에서의 차별 역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몇 년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에바다 농아복지원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의 책, pp.400-401.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위의 책, pp.169-170.

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위의 책, pp.180-18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시설 내에서 불임을 강요당한 경험에 대해 전체 장애인의 23.2%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욕실 등에서 벗은 몸을 강제로 노출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의 27.2%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 두발 형태에 대한 강요(25.3%), 복장제한(25.9%), 직원의 희롱(23.6%), 통신제한(27.4%), 타인접촉제한(26.0%), 식사제한(22.9%), 약물투여로 인한 행동제한(21.2%) 등이 자주 나타나는 차별과 인권침해였다.

(8) 정치적 차별

정치적인 차별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선거권의 제한과 피선거권의 박탈이 바로 그것이다. 선거권의 제한은 선거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며, 아울러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투표소까지의 접근, 투표소의 편의시설, 투표방법 등에 대한 필요하고 적절한 환경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1999년의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 장애인의 23.4%가 투표를 하지 못했으며,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의 49.6%가 투표소까지 가기 힘들어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거일을 몰라서 투표를 못했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전체 장애인의 12.8%에 달하고 있었다.²⁰⁾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장애인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0) 자료집, “장애인 선거의식과 선거환경, 어디까지 와 있나”(서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8), pp.20-21.

에서조차 법원은 정신적 피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9) 경제적 차별

경제적 차별은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차별이다. 실제로 1998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이 194만원이었을 때,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0만원이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 거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차별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종업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기관마저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보다 월 평균 10만원의 비용이 더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소득은 절반에도 못 미치며, 취업률이 역시 36.3%였으며, 실업률 역시 52.6%에 달했다.²¹⁾ 이것은 비장애인의 취업률과 실업률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관련법률들과의 관계-기준의 장

2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142.

애인관련법률들만으로는 부족한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접재활에 관한 법(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편의증진법) 등 모두 4개의 장애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의료, 생계, 재활,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직업재활법에서, 접근에 대한 차별은 편의증진법에서 다루어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차별을 이미 기존의 법률들에서 다루어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8월에 장애를 비롯한 연령 등 각종 차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가?

첫째, 기존의 법률들이 다루고 있지 못한 차별의 영역들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8조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의료 및 재활에 있어서의 차별, 생존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서의 차별, 재화 및 각종 사회적 서비스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차별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못하다. 특수교육진흥법 역시 제13조에서 입학 거부 등의 차별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모든 학교 내에서의 학습권과 관련된 차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특

수교육진흥법은 차별금지 조항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두고 있으나 교육 전반에 걸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직업 재활법 제4조는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시의 차별의 무엇이며, 승진시의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인사관리상에서 당하는 차별 외에 직장 내에서 당할 수 있는 각종 차별 및 근로환경의 미비로 차별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편의증진법은 제4조에서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접근권의 위반이 차별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실제로 편의증진법에서 건축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법률들의 차별금지 조항의 가장 큰 단점은 직접적인 차별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간접적 차별금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될수록 직접적 차별은 감소하는 반면에 간접적 차별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며, 우리나라로 예외는 아니어서 장애를 이유로 직접적인 차별은 가하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적 차별에 대한 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법률들의 차별금지는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편의증진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두 조항 정도는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모든 규정들은 자세한 지침과 벌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고 있다. 일례로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을 가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줄 수 있는 벌칙규정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차별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직업재활법의 고용시의 차별금지나 편의증진법의 접근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들 법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은 지켜도 좋고 안지켜도 좋은 명문상의 조항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차별금지지침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심사를 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이것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모든 차별사례에 대해 당사자에게 권고만 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일부 법률의 한 조항이나 일부 조항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문제이다.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단지 장애의 문제만이 아니며, 복지의 문제도, 고용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접근권만의 문제도 아니다.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이

다. 현재의 장애 관련 4개의 법률만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전 영역과 전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차별을 모두 금지할 수 없으며,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차별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과 장애인의 삶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차별을 금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의 장애관련 법률들은 차별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차별에 대한 정의와 차별금지를 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Affirmative Action을 구분해야 하며, 차별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진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차별을 가하는 집단 및 개인에 대한 규정과 차별을 당하는 장애인 개인 및 계층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 더불어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 사회구조, 문화구조 및 차별금지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차별금지를 사회적 인식과 시민의 인식 성숙에 이르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과 과정은 현재의 장애관련 법률로는 할 수 없는 기능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 속에 차별에 대한 정의와 상황을 담아 낼 수 있다.

다섯째, 장애인 차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성별, 연령 등 일반적인 차별과도 매

우 다른 특수성과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라는 익숙하지 않음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배타적 문화와 외모·외형만을 중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으뜸시하는 사회 구조가 만든 합작품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서로 다름에 대한 차별이며, 소수에 대한 차별이고 외모에 대한 차별이며, 느낌에 대한 차별이고 인간에 의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차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갖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관련 법률들이 아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이 요구된다.

3. 장애인운동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의미

우리나라의 장애인 운동은 1980년대에 시작이 되어 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의 서울장애인올림픽 반대 투쟁에서부터 1990년대 있었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고용촉진법의 제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운동과 최근의 이동권 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운동은 끊임없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맞서 싸워왔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운동의 결실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지난 30여 년에 걸친 장애인인권운동의 결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인권운동의 종착지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온 장애인권운동의 투쟁의 산물이며 결산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도로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84년에 목숨을 끊은 고 김순석씨에서부터 2002년에 여성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한 고통과 생활고라는 이중의 고통가 맞서 싸운 최옥란 열사의 죽음과 2001년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의 추락으로 숨진 고 고재봉씨, 최근에 송내역에서 선으로 추락하여 목숨을 잃은 고 장영섭씨의 축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이다. 이들은 모두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의 희생자였으며, 이들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차별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는 생존권확보 운동, 교육권 확보 운동, 노동권 확보 운동, 편의시설 확보 운동, 참정권 확보 운동, 이동권 확보 운동 등을 펼쳐 왔다. 이 모든 운동의 시발점은 바로 생존할 수 없고 교육받을 수 없으며 일할 수 없고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투표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결국 생존권운동에서부터 이동권운동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권운동은 모두 차별과 맞서 싸우는 운동이었으며 장애인에게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야말로 이 모든 운동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진정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되는 연대 운동이다.

그동안 장애인권운동의 과정에 있어서 일부 단체들이 연대를 하거나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처럼 범장애인계가 하나가 된 일은 없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는 의미 외에 장애계의 숙원이던 연대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장애인단체의 연대는 장애인단체들로만 구성된 반면에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연대에는 기독변호사회 등 장애인단체가 아닌 단체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장애와 비장애, 당사자와 전문가의 벽을 뛰어넘은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위로부터의 운동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다.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ADA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법무성에서 만든 법률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 만든 법률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가 만든 법률안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하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계에서 직접 법률안을 만들고 그 법률에 장애인의 의견을 담아내고 그것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운동은 장애인 당사자의 성숙과 장애인계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넷째, 권리운동에서 인권운동으로의 전환이다.

장애인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NGO)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한계 때문이다. 물론 장애인 당사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생존환경의 척박함이 장애인 당사자만의 권리 추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단체들의 인권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이제는 장애인단체들도 권리운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도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운동은 바로 장애인 운동이 이제 권리 운동에서 인권 운동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만의 이익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에게는 차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하고 있는 차별을 깨닫게 하고 이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민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회적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의 선구적 역할이다.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전부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만이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들은 각 영역마다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카해지는 주요 영역에 대한 개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바로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시발점이며, 촉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우리 사회 및 시민의식의 성숙의 표현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비롯해 이주노동자, 외국인, 혼혈인, 성적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등 소수의 인권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단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이다.